[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기 종 및 형 식	
차 대 번 호	
매 매 일 자	
매 매 금 액	
비 고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양도인(갑)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수인(을)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 80g/㎡)